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9호

##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(' 24. 1. 11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'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12일

서울특별시

## 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

| 연번 | 자치구 | 명 칭(가칭) | 위 치        | 면적(㎡)  | 권리산정기준일    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1  | 구로구 | 개봉7구역   | 개봉동49번지 일대 | 54,947 | 2023.11.30. |
| 2  | 구로구 | 오류1동4일대 | 오류동4번지 일대  | 53,107 | 2023.11.30. |
| 3  | 금천구 | 독산C구역   | 독산동1036일대  | 79,036 | 2023.12.19. |
| 4  | 금천구 | 뉴독산 구역  | 독산동1072일대  | 81,663 | 2023.12.19. |
| 5  | 관악구 | 난곡1     | 신림동650번지일대 | 92,041 | 2023.12.08. |

## 2. 지정사유

-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,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## 4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-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## 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## 6. 안내사항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(☎02-2133-7236)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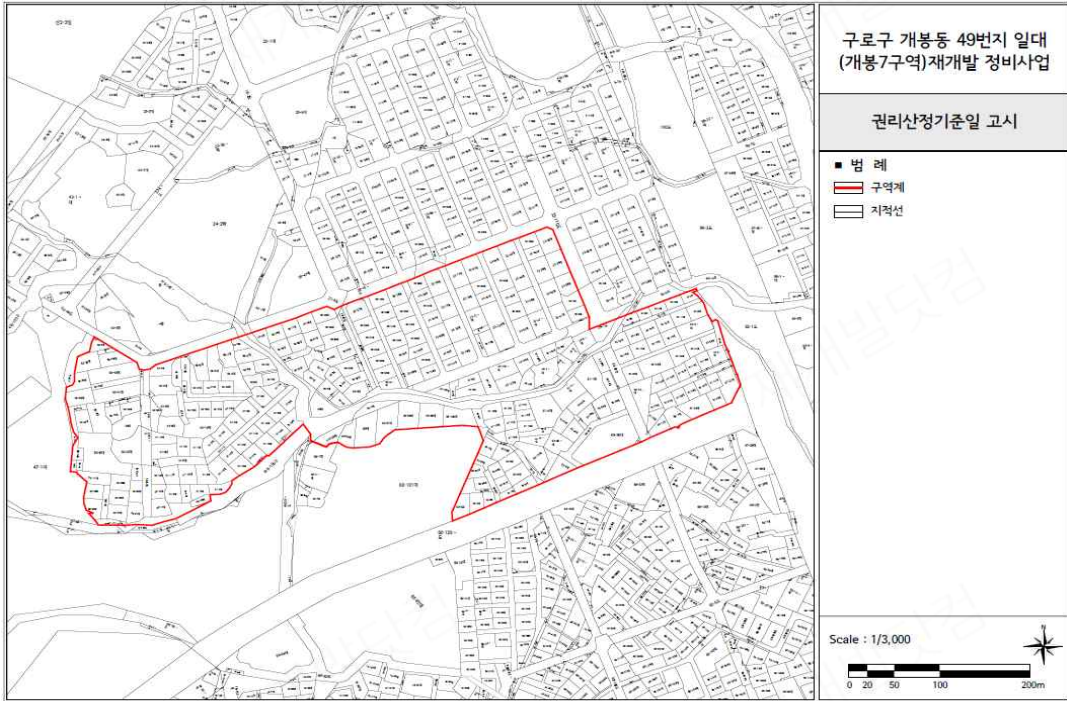
| 자치구 | 부서명   | 연락처          | 비고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구로구 | 도시개발과 | 02-860-2963  |    |
| 금천구 | 주거정비과 | 02-2627-1560 |    |
| 관악구 | 주택과   | 02-879-6304  |    |

※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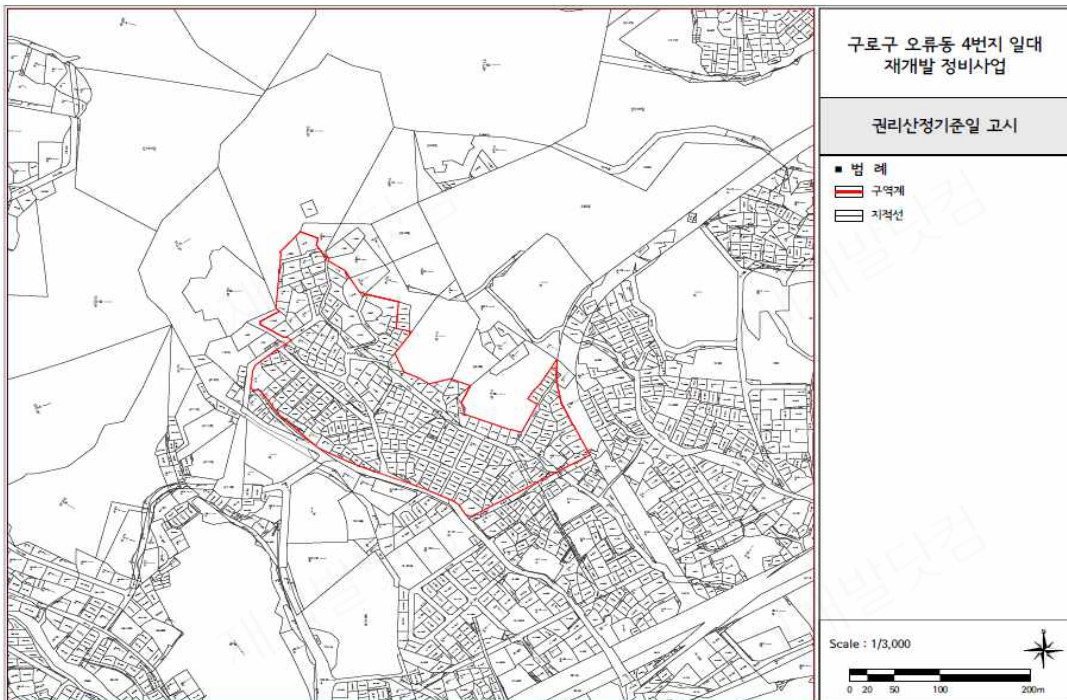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■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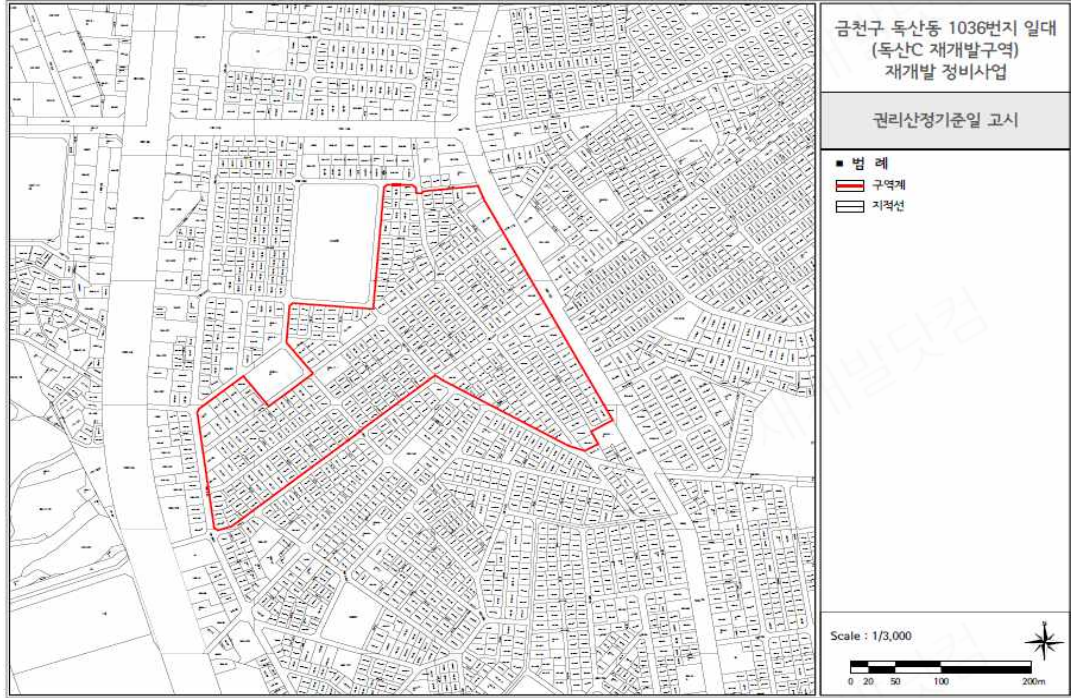
○ 개봉7구역(구로구 개봉동49번지 일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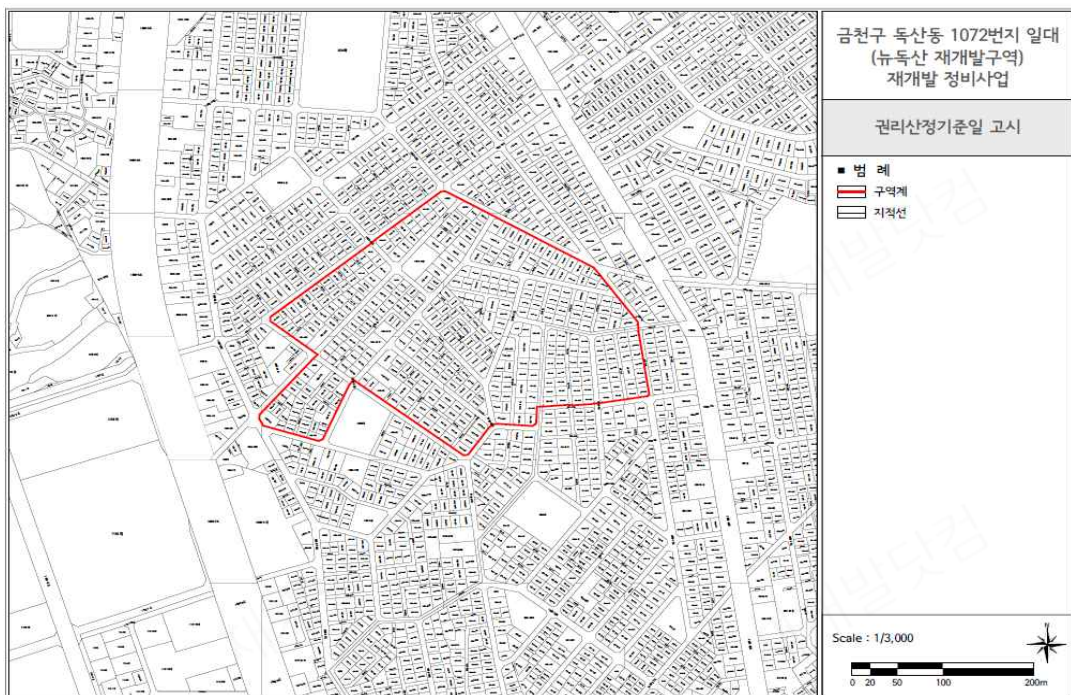
○ 오류1동4일대(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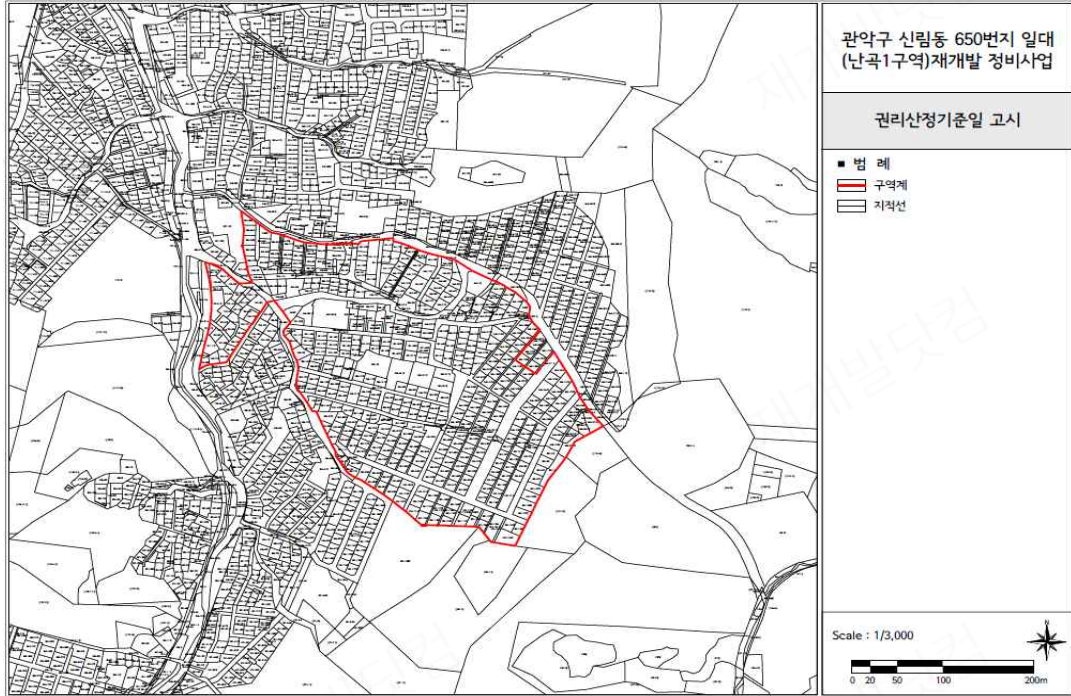
○ 독산C구역(금천구 독산동 1036 일대)



○ 뉴독산구역(금천구 독산동 1072 일대)



○ 난곡1구역(관악구 신림동650번지 일대)



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기관의 장 |  |
| 선     |  |
| 람     |  |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